

2023학년도 중소기업 계약학과 대구대학교 **IT융합학과** 편입생 모집 안내

2022. 11.



대구대학교
DAEGU UNIVERSITY

정보통신대학

I. 중소기업 계약학과 안내	1
1. 중소기업 계약학과란	
2. 관련법령	
3. 교육목표	
4. 교육과정	
5. 계약학과 참여절차	
II. 중소기업 계약학과 편입학 안내	2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2. 전형일정	
3. 등록금 국비지원 내용	
4. 지원자격	
5. 참여 혜택 안내	
6. 전형방법 및 선발기준	
7. 제출서류	
III. 중소기업 계약학과 학사관련 안내 및 지원자 유의사항	6
1. 학사관련 안내사항	
2. 지원자 유의사항	
IV. 편입학 제출서류 서식	8
1. 편입학 원서	
2. 참여기업 신청서	
3. 입학 추천서	
4. 3자 계약서	
5. 개인정보 수입·이용·제공 동의서	

I. 중소기업 계약학과 안내

1. 「중소기업 계약학과」란

중소벤처기업부-대학-기업 3자 간 공동계약에 의해 기업이 요구하는 내용을 반영하여 대학에 설치·운영하는 학과로서 일·학습병행을 통한 중소기업 재직자의 능력향상 및 우수인력 양성 과정

2. 관련법령

- 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 나. 중소기업 계약학과 운영지침(2022.8)

3. 교육목표

컴퓨터·IT, 기계, 산업경영, 창의혁신, 융합기술 등의 특화된 융합 교육과정을 통해 IT융합 전문인력 양성
 IT융합 기술에 대한 이해와 혁신역량을 갖춘 산업인력 양성
 재직자 실무능력 제고 및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배양

4. 교육과정

	교과목명(1학기)		교과목명(2학기)	
3학년	OA실무	IT융합현장과제	문제해결능력기초	직업윤리실무
	IT융합실무	융합IT시스템	디지털디자인실무	IT융합현장실습
	기계제작실무	피지컬컴퓨팅	생산관리실무	데이터구조
	IT프로그래밍	디지털설계	4차산업혁명기술	마이크로프로세서
	CAD기초		소재기술실무	네트워크보안
4학년	특허기술	사물인터넷응용	종합설계프로젝트	CAD응용
	인적자원관리실무	모바일융합기술	심화프로그래밍	IT신기술
	안전공학실무	그래픽스실무	품질관리	기술품질경영
	인공지능기술	컴퓨터네트워크	빅데이터컴퓨팅	융합시스템소프트웨어
	기계설계응용실무	데이터베이스	IT융합프로젝트	로봇공학

5. 계약학과 참여절차



Ⅱ. 중소기업 계약학과 편입학 안내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구분	대학	모집단위	편입	과정	모집인원	모집유형
중소기업 계약학과	정보통신대학	IT융합학과	3학년 편입	학사 (공학사)	2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교육형 ● 재교육형의 동시채용형

2. 전형일정

구분	일시	장소	비고
원서교부	2022. 11. 1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대학교 > 입학안내 > 공지사항 확인 http://ipsi.daegu.ac.kr • IT융합학과 > 공지사항 확인 https://itcon.daegu.ac.kr (☎053-850-4760) 	
원서접수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2022. 11. 15.(화) ~ 2023. 1. 10.(화)	[제출처] (38453) 경북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대구대학교 정보통신대학2호관 공7411호 IT융합학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기우편/방문제출 • 기간 내 서류 미제출자는 불합격 처리
서류심사	2023. 1. 11.(수)		
면접일시	2023. 1. 12.(목)	별도 공지	
합격자 발표	2023. 1. 16.(월)	별도 공지	
합격자 등록	2023. 1. 17.(화) ~ 1. 19.(목)	• 지정은행 창구납부	• 등록금고지서 개별 이메일 발송

※서류 도착 확인 및 문의처 : IT융합학과 사무실(053-850-4760, 6575, 6587)

3. 등록금 국비지원 내용

구분	재교육형	
	일반	동시채용
등록금	중소기업 85% (나머지는 기업, 학생부담)	정부지원 100%
	중견기업 40% (나머지는 기업, 학생부담) ※최근 결산년도 매출액 3천억 이상의 중견기업의 경우 정부지원 없음	
	[예시] '22년 1학기 기준 등록금(학사): 2,350,000원	
	정부지원금(85%) 1,997,500원	기업부담금(7.5%) 176,250원 학생부담금(7.5%) 176,250원
지원기간	최대2년(4학기)	
의무근무	졸업 후 1년	졸업 후 2년

4. 지원자격

가. 참여기업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단, 부동산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게임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제외

②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기업으로 선발할 수 없음.**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기업의 파산, 회생절차, 대표자 회신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최근 결산 기준 부채비율이 500% 이상이거나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학위과정의 교육내용과 참여기업의 업종 또는 참여학생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가 상호 관련성이 없는 경우

나. 참여학생

※ 지원자 유의사항 중 편입학 지원자격 유의사항 참고(동등 이상 학력 내용 참조)

유형구분	참여대상	지원자격
재교육형 (일반)	참여기업 6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	<p>① 참여기업 지원자격의 중소기업에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참여기업에서 학기 개시일(봄학기 3월1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자(4대 보험 가입 필수)로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어야 하며, 만약 그렇지 아니한 경우 근무기간이 계약학과 운영 및 최소 의무근무 기간보다 장기간이어야 한다.</p> <p>※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대표자는 제외하되,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실질적 근로를 제공하는 전문경영인은 포함한다.</p> <p>② 본 학과 학위과정 교육내용과 참여기업의 업종 또는 참여학생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가 상호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p> <p>③ 위 자격요건 ①과 ②를 갖춘 근로자로, 전문학사 학위가 있거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p>
재교육형 (동시채용)	참여기업에 재직경력이 없어야 함 (단, 원서접수 개시일부터 학기개시일 전까지 근로 계약체결)	<p>① 참여기업 지원자격의 중소기업과의 근로계약을 통해 학기 시작과 동시에 채용되어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p> <p>※ 원서접수 개시일부터 학기 개시일(3월 1일) 전까지 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4대 보험 가입 필수). 다만, 신입생 모집공고일 기준 전문대학 및 대학 졸업예정자는 원서접수 개시일 이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재교육형 동시채용에 참여할 수 있음.</p> <p>② 참여학생은 근로계약 또는 채용약정의 체결시점을 기준으로 참여기업에서 과거에 근무한 경력이 없어야 한다.(증빙서류 제출)</p> <p>③ 본 학과 학위과정 교육내용과 참여기업의 업종 또는 참여학생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가 상호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p> <p>④ 위 자격요건 ①, ②, ③을 갖춘 근로자로, 전문학사 학위가 있거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p>

5. 참여 혜택 안내

가. 기업혜택

■ 공통사항

기업의 핵심인력 양성 및 장기재직 유도

■ 재교육형의 동시채용형 참여 시

기술개발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신청 시 가점 부여
 정책자금 신청 시 우대 할 수 있음

나. 학생혜택

■ 공통사항

교육비(등록금의 85~100%) 지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부보조금 추가 지원

▷매학기 개시일 기준 **내일채움공제(청년내일채움공제 포함) 가입 근로자의 경우 정부보조금의 지원 비율을 10% 상향 지원함**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부보조금의 지원 비율을 5% 상향 지원 함**

편.입학일 기준 3년 이내 중소기업 특성화고 취업(산학)맞춤반 채용협약에 의하여 채용된 근로자

편.입학일 기준 3년 이내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완료과제에 참여한 근로자

계약학과 학위과정을 졸업하고 상급 학위과정으로 진학하는 근로자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혁신 선도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

6. 전형방법 및 선발기준

가. 전형방법

구분	학과	전형방법		선발기준
		1차	2차	
중소기업 계약학과	IT융합학과	서류심사	면접고사 (서류심사 통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참여 자격요건 심사 • 수학능력 및 의지 등 면접

※ 면접고사장은 추후 홈페이지 공지하며, 수험생은 면접고사 시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함

나. 서류전형

- 1) 중소기업계약학과 운영지침에 근거하여 지원자격, 필수 서류제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서류 합격자 사정 실시
- 2) 본 모집 요강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본교에서 정하여 시행

다. 면접고사

- 1) 지원동기, 업무연관성, 학업이수계획, 계약학과 이해도 등을 기반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하여 최종합격자 선정

7. 제출서류(서식 참조)

구분	제출서류	비고
재교육형 (일반)	편입학 원서	첨부 서식 작성
	학력증명서	
	전적 대학 전(全)학년 성적증명서	
	참여기업 신청서 (신청서 첨부 서류 포함)	첨부 서식 작성
	입학 추천서 (추천서 첨부 서류 포함)	첨부 서식 작성
	3자 계약서 (3부) (계약서 첨부 서류 포함)	첨부 서식 작성
	기업(신용)정보 관련 서약서(첨부 서류 포함)	첨부 서식 작성
재교육형 (동시채용형)	편입학 원서	첨부 서식 작성
	학력증명서	
	전적 대학 전(全)학년 성적증명서	
	참여기업 신청서 (신청서 첨부 서류 포함)	첨부 서식 작성
	입학 추천서 (추천서 첨부 서류 포함)	첨부 서식 작성
	3자 계약서 (3부) (계약서 첨부 서류 포함)	첨부 서식 작성
	근로계약서	첨부 서식 작성
	참여학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참여기업 재직 경력 확인용
기업(신용)정보 관련 서약서(첨부 서류 포함)	첨부 서식 작성	

■ 학력 및 성적증명 제출서류 유의사항

구분	제출서류	비고
공통	학력증명서	·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졸업(예정)증명서 · 4년제 대학 2학년(4개 학기) 이상 수료(예정)자: 수료(예정)증명서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전문학사학위 취득(예정)자: 전문학사학위(예정)증명서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학사학위과정 80학점 이상 취득자: 학점인정증명서
	전적 대학 전(全)학년 성적증명서	· 전학년 평점평균/평점만점, 총 취득학점이 기재되어 있는 성적증명서 제출 * 2022학년도 2학기 성적까지만 반영 (2022년 동계계절학기 성적 미반영) * 편입학 등으로 전적대학이 2개 이상인 경우, 제출 대학 성적만 반영
외국대학 졸업자	졸업(예정)증명서	· 해당국 교육관련 법규에 의하여 설치된 (전문)대학에 한해 인정 · 학교 소재국 영사관 또는 지정기관에서 발생한 아포스티유확인서 또는 영사공증(확인 필) 제출 · 영어를 제외한 외국어로 된 서류는 한글로 번역 후 공증받아 제출
	전(全)학년 성적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 공통 제출서류는 2022. 11. 14.(월)이후 발급된 것만 인정되며, 서류 원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 지연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편입학 담당자와 협의 부탁드립니다. ☎ 053-850-4760

* 합격자 중, 2023년 2월 졸업(수료) 예정자로서 졸업(수료)예정증명서를 제출한 자는 2023. 2. 20.(월)까지 졸업(수료)증명서 1부를 입학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당해학기 졸업 또는 수료가 불가능한 자는 합격을 취소하며 학력조회 결과 미졸업(미수료)자는 재학 중이라도 입학 취소를 합니다.

* 제출주소: [우]38453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대구대학교 정보통신대학2호관 7411호 IT융합학과

* 제출기간: 2022. 11. 15.(화) ~ 2023. 1. 10.(화) 17:00

Ⅲ. 중소기업 계약학과 학사관련 안내 및 지원자 유의사항

1. 학사관련 안내사항

■ 수업 및 졸업

- 가. 수업장소 : 대구대학교 경산캠퍼스
- 나. 출석수업 : 주말 수업(토요일 전일 수업)
- 다. 이수학점 : 65학점(학기당 평균 15학점 이수, 15학점 중 6학점은 온라인 강의)
- 라. 수업연한 : 2년(3학년 편입)
- 마. 졸업학점 : 130학점(전문학사 및 동등 학위소지자 65학점 인정)

■ 학사관리

- 가. 입학전형 이후의 학사관리는 대구대학교 학칙 및 관련 규정 등에 의해 관리함
 - ※ 소정의 과정을 이수(65학점)하면 대구대학교 일반학과 졸업생과 동등한 학사학위 수여함
- 나. 졸업 및 졸업 후 학적관리 등은 대구대학교 학칙 및 중소기업계약학과 운영지침 등에 의해 관리함
- 다. 전 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전과 또는 휴학할 수 없으며, 수학 중 자의로 중도 포기 시 수혜 받은 정부지원금을 전액 반환하여야 함

■ 의무 근무 기간 및 재직확인 등(중소기업계약학과 운영지침 제21조, 24조, 25조)

가. 의무근무기간

- 1) 재교육형(일반) - 학위 취득 후, 최소 1년 이상 참여 기업에서 근무할 의무가 있음
- 2) 재교육형(동시채용) - 학위 취득 후, 최소 2년 이상 참여 기업에서 근무할 의무가 있음
- 3) 의무 근무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본인 원에 의한 자진퇴사할 경우 보조금 환수

나. 재직확인 사항

- 1) 재학 중 및 최소 의무근무기간 중에 있는 참여학생의 재직여부 확인
 - ① 매학기 개시 전월의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영수부), 4대보험 가입증명서 및 재직증명서를 통해 재직여부 확인
 - ② 매학기 개시일 기준 참여기업의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최근 결산년도 매출액(중견기업에 한한다)을 제출하여 참여기업 확인(재학 중인 참여학생에 대해서만 적용)
- 2) 참여학생은 참여기업에서의 근무상황이 바뀌었을 경우 즉시 주관대학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알리지 않는 경우 보조금 환수 대상 및 입학 취소 됨

다. 등록금 부담

- 1) 참여학생은 매학기 개시 전 까지 정부보조금을 담보하는 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수
- 2) 매 학기 등록 시 산업체에서는 산업체부담금에 대해 산업체 명의의 통장 입출금 내역 또는 입금 확인서, 예산편성 내역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2. 유의사항

가. 지원자 유의사항

1. 입학원서를 접수하는 것으로 개인정보 자료 활용 및 제공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2. 전 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휴학 또는 전과가 불가하며, 입학 당시 재직 중인 업체를 본인의 의사로 자진퇴사 하는 경우 국고보조금 환수, 입학 취소 또는 제적처리 됩니다.
3. 계약학과 재학중 퇴직 등 참여기업에서의 근무상황이 바뀌었을 경우 즉시 학교로 알려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알리지 않는 경우 해당학생의 입학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4. 원서입력사항(학력, 성적 등)이 사실과 다르거나 서류의 위·변조, 대리시험, 지원자격 미달, 부정행위, 복수지원 위반 등 기타 부정행위로 합격 또는 편입학한 사실이 확인될 때는 합격 또는 입학허가가 취소 됩니다.
5. 입학원서 작성오류, 기재사항 누락, 제출서류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입니다.
6. 이미 접수된 서류는 정정할 수 없으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7. 추가 합격통보 및 제출서류 확인 등은 원서에 기재된 연락처로 통보되니 연락처 기재 잘못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가 감수하여야 하며, 지원자 주소/연락처 변경 시에는 학과사무실로 반드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53-850-4760).
8. 합격하여 등록한 자라도 학력조회 결과 당해학기 졸업(수료)이 불가능한 자와 학력 미인정학교 출신자는 합격 또는 입학허가를 취소합니다.
9. 합격자 중 2023년 2월 졸업(수료)예정자로서 졸업(수료)예정증명서를 제출한 자는 2023. 2. 20.(월)까지 졸업(수료)증명서 1부를 IT융합학과로 제출하여야 하며, 당해학기 졸업 또는 수료가 불가능한 자는 합격을 취소하며 학력조회 결과 미졸업(미수료)자는 재학 중이라도 입학을 취소합니다.
10. 외국대학 졸업(수료)자의 경우 우리나라의 여권법 및 출입국 관련 법령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출국해서 해당국가에 유학하여 수학기간 동안 거주한 자이어야 합니다.
11. 편입학전형 성적은 공개하지 않으며 본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에서 정하여 시행합니다.
12. 전적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의 인정은 편입학 후 본교 학점 인정기준에 따릅니다.
13. 본 모집요강은 일부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우리 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IT융합학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4. 등록포기 및 납입금 환불은 「대구대학교 등록금에 관한 규정」 및 「중소기업계약학과 운영지침」의 반환 기준에 준하여 반환합니다.
15. 기타 문의 사항 및 원서접수, 제출서류 도착여부는 대구대학교 정보통신대학 IT융합학과(053-850-4760, 6575, 6578)로 문의 바랍니다.
16. 요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구대학교 및 중소기업 계약학과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나. 편입학 지원자격 유의사항 (전적대학 출신학과(전공)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

1.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및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4년제 대학(방통대, 산업대학 등 포함)에서 2학년 또는 4개 학기(계절학기 제외) 이상 수료(예정)하고 수료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을 이수한 자
 - "2학년 또는 4개 학기 이상 수료자"란 출신대학에서 규정한 2학년 또는 4개 학기(계절학기 제외) 이상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취득한 자를 의미하므로, 지원 전에 반드시 출신대학에 수료요건을 확인한 후 지원하여야 함
3.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전문학사 취득자(2023년 2월 취득 예정자 포함) 또는 학사학위과정의 경우 취득한 학점이 80학점 이상인 자
4. 「고등교육법」 제50조의3에 따라 교육부가 지정한 84개 전문대학 간호학과에서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과정을 2학년 또는 4학기(계절학기 제외) 이상 수료하고 소정의 학점을 이수한 자

IV. 제출서류 서식(붙임 서식 참조)



2023학년도 중소기업 계약학과 IT융합학과 편입학 원서

사 진
3×4cm

수험번호											
학 과 명(전공)		IT융합학과						모집구분	편입학		
인 적 사 항	성 명						성별	남 <input type="checkbox"/> · 여 <input type="checkbox"/>			
	영 문						전화 번호				
	휴대폰						E-mail				
	주 민 등 록 번 호							—			
주 소											
최종학력		년 월 일 () 전문대학, 대학 졸업 및 수료(예정)									
병역사항		군필자	면제자	미필자	해당없음	기타					
참 여 기 업	기업체명					대표자명					
	연락처					이메일					
	주소						연구인력(명)				
본인은 귀 대학에 계약학과 학생으로 입학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지 원 자 : (서명 또는 인)											
※ 첨부 1. 최종학력(졸업, 2학년 수료) 증명서 1부 2.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											
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산 업 체 명 : 대표 : (인)											
대구대학교총장 귀하											

「중소기업 계약학과」 참여기업 신청서			
기 업 명		대 표 자 명	
사 업 자 등 록 번 호		기 업 규 모	<input type="checkbox"/> 중 소 기 업 <input type="checkbox"/> 중 견 기 업
소 재 지			
주 요 생 산 품		표 준 산 업 류	※예) 금속열처리업, 철강선 제조업 등 상세 분류 작성
자 본 금	백만원	매 출 액	백만원
4 대 보 험 부 가 입 여 부	<input type="checkbox"/> 가입 <input type="checkbox"/> 미가입	상 시 근 로 자 수	명
업 무 담 당 자	부서명		연 락 처
	성 명		F A X
참 여 회 망 근 로 자	성 명		지 원 학 과
	성 명		지 원 학 과
<p>「중소기업 계약학과」 운영지침 제14조제2항에 의거 위와 같이 참여기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p> <p>※ 첨부 1. 사업자등록증 1부 2. 중소기업 확인서 1부(중소기업만 해당, sminfo.smta.gakr에서 발급) 3. 중견기업 확인서 및 최근결산년도 재무제표 각 1부(중견기업만 해당) 4. 건강보험사업장 적용통보서 1부 5. 중소기업 계약학과 입학 추천서 1부</p> <p style="text-align: center;">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기업명 : 대표자 : (인)</p> <p style="text-align: center;">(대구)대학교 총장 귀하</p>			

「중소기업 계약학과」 입학 추천서

성 명		생 년 월 일	
지 원 학 과		연 락 처	
근 무 부 서		재 직 기 간 (개 월)	(년 월 일 ~ 현재)
직 위		담 당 업 무	

<추천사유>

교육과정과 추천대상자의 직무 간 상호 연관성(현재 또는 향후)

학위과정 수료이후 추천대상자에 대해 기대하는 효과

기타 위 사람을 추천한 특별한 사유

위 사람을 2023학년도 대구대학교 「중소기업 계약학과」 입학희망자로 추천합니다.

- ※ 첨부 1. 재직증명서 1부
 2. 4대보험 가입증명서 1부
 3. 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지급조서나 근로소득원천징수부로 대체가능) 1부

대표자 : (인)

(대구)대학교 총장 귀하

「중소기업 계약학과」 3자 계약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주관대학의 장”과 “참여기업 대표”, “참여학생”은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주관대학의 장”과 “참여기업 대표”, “참여학생”이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지침 준수) “주관대학의 장”과 “참여기업 대표”, “참여학생”은 「중소기업 계약학과 운영지침」 (이하 “운영지침”이라 한다)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한다.

제3조(등록금 납부) “참여기업 대표”와 “참여학생”은 아래 등록금 부담비율에 따라 산출된 등록금 부담금액을 “주관대학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납부해야 한다.

등록금 부담비율 (100%)	정부보조비율	민간부담비율	
		참여기업 부담비율	참여학생 부담비율
	%	%	%

제4조(의무근무) “참여학생”은 졸업일로부터 1년 이상 “참여기업”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며, 의무근무 기간은 “참여기업 대표”와 “참여학생” 간 협의에 아래와 같이 약정한다.

“참여학생”의 졸업 후 의무근무 기간 : 1년

제5조(지도·감독) “주관대학의 장”은 운영지침에 따라 학과를 운영해야 하며, “참여학생”이 원활히 학과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성실히 수행한다.

제6조(학위과정지원) “참여기업 대표”는 “참여학생”이 학위과정을 원활히 이수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 지원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참여학생”이 학위과정 도중에 퇴직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주관대학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고지의무) 참여학생은 퇴직 등 참여기업에서의 근무상황이 바뀌었을 경우 지체 없이 주관대학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알리지 않았을 경우 주관대학은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참여학생을 제재할 수 있다.

제8조(등록금 반환) “참여학생”은 자퇴, 제적, 퇴사 등으로 운영지침 제22조에 따라 등록금을 반환해야 할 경우 “주관대학의 장” 또는 “전담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받은 정부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

제9조(상호협력) “주관대학의 장”과 “참여기업 대표” 및 “참여학생”은 다음과 같이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상호 협력해야 한다.

- 가. 산업교육 추진 및 산학협력 촉진
- 나. 교육과정 및 교재의 공동개발 추진 및 참여
- 다. 참여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과제의 발굴과 교수에 의한 위탁연구 또는 산업체 임직원이나 연구원과의 공동연구의 추진
- 라. 학생의 현장실습 및 취업의 추진
- 마. 교육용 실험실습 시설의 공동 활용 및 교육용 기자재 기증
- 바. 학생생활지도 및 학습 분위기 조성을 위한 협력
- 사. 산업체의 시설 및 교수자격이 있는 자의 활용
- 아. 기타 계약학과 개설 및 운영관련 사항

제10조(비밀유지) “주관대학의 장”과 “참여기업 대표”, “참여학생”은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 참여를 통하여 취득한 정보 및 자료 등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서는 “주관대학의 장”과 “참여기업 대표”와 “참여학생”이 각 1부씩 보관하고, 계약서의 효력은 계약 당사자 간에 서명·날인한 날부터 “참여학생”의 의무 근무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유효하다.

20 년 월 일

붙임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주관대학의 장”	대구대학교	총 장	박 순 진 (서 명)
“참여기업 대표”	○ ○ ○ (주)	대 표	(서 명)
“참여학생”	○ ○ ○ (주)		(서 명)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대학교는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제33조, 제3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과 관련한 학생선발 및 사업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 수집·이용할 항목

- 필수항목
 - 개인식별정보(성명, 생년월일, 사무실 전화, 소속, E-mail, 직위, 휴대전화, 학력)

□ 보유·이용기간

- 위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보유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단, 협약 종료일 후에는 향후 정부지원사업 신청 시의 이력관리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되며 기간은 3년입니다.(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신용)정보 중 필수항목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본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이에 동의하셔야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본 지원사업에 신청이 불가합니다.

□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고유식별정보	생년월일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필수항목 : 개인식별정보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2.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 중소벤처기업부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 전담기관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 관리·운영, 관련 자료 활용, 정책자료 활용

제공할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수집·이용에 동의한 정보 및 학번, 출석 등 학적사항 전반

제공받은 자의 개인(신용) 정보 보유·이용 기간

- 위 개인(신용)정보는 제공된 날부터 3년간 보유·이용되며 보유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 시 본 지원사업에 신청이 불가합니다.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고유식별정보	생년월일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필수항목 : 개인식별정보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20 년 월 일

동의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중소기업 계약학과」 3자 계약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주관대학의 장”과 “참여기업 대표”, “참여학생”은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주관대학의 장”과 “참여기업 대표”, “참여학생”이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지침 준수) “주관대학의 장”과 “참여기업 대표”, “참여학생”은 「중소기업 계약학과 운영지침」 (이하 “운영지침”이라 한다)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한다.

제3조(채용의무) ① “참여기업 대표”는 “참여학생”이 운영지침 제17조에 따라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따라 학기 개시일전까지 채용을 완료해야 한다.

② “참여기업”이 “참여학생”의 동의 없이 “근로계약서”에 제시한 고용조건을 과도하게 변경할 경우 “참여학생”은 “주관대학의 장”에게 3자 계약 해약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주관대학의 장”은 제2항의 해약 요청에 대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해약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4조(의무근무) “참여학생”은 졸업일로부터 최소 2년 간 “참여기업”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며, 의무근무 기간은 “참여기업 대표”와 “참여학생” 간 협의에 아래와 같이 약정한다.

“참여학생”의 졸업 후 의무근무 기간 : 2년

제5조(지도·감독) “주관대학의 장”은 운영지침에 따라 학과를 운영해야 하며, “참여학생”이 원활히 학과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성실히 수행한다.

제6조(등록금의 반환 등) “참여학생”은 자퇴, 제적, 퇴사 등으로 운영지침 제22조에 따라 등록금을 반환해야 할 경우 “주관대학의 장” 또는 “전담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받은 정부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

제7조(상호협력) “주관대학의 장”과 “참여기업 대표” 및 “참여학생”은 다음과 같이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상호 협력해야 한다.

- 가. 산업교육 추진 및 산학협력 촉진
- 나. 교육과정 및 교재의 공동개발 추진 및 참여
- 다. 참여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과제의 발굴과 교수에 의한 위탁연구 또는 산업체 임직원이나 연구원과의 공동연구의 추진
- 라. 학생의 현장실습 및 취업의 추진
- 마. 교육용 실험실습 시설의 공동 활용 및 교육용 기자재 기증
- 바. 학생생활지도 및 학습 분위기 조성을 위한 협력
- 사. 산업체의 시설 및 교수자격이 있는 자의 활용
- 아. 기타 계약학과 개설 및 운영관련 사항

제8조(비밀유지) “주관대학의 장”과 “참여기업 대표”, “참여학생”은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 참여를 통하여 취득한 정보 및 자료 등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서는 “주관대학의 장”과 “참여기업 대표”와 “참여학생”이 각 1부씩 보관하고, 계약서의 효력은 계약 당사자 간에 서명·날인한 날부터 “참여학생”의 의무 근무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유효하다.

20 년 월 일

- 붙임 : 1.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2. 중소기업계약학과 근로계약서 1부.

“주관대학의 장”	대구대학교	총 장	박 순 진 (서 명)
“참여기업 대표”	○ ○ ○ (주)	대 표	(서 명)
“참여학생”	○ ○ ○ (주)		(서 명)

「중소기업 계약학과」 근로계약서 (예시)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에 참여한 “참여기업”과 “참여학생”은 중소기업 계약학과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이라 한다.) 제23조제2항과 3자 계약서에 따라 의무근무 실시하기 위해 아래사항을 계약합니다.

가. “참여기업”은 “참여학생”에 고용형태, 근로개시일, 근무장소 등에 대해 아래에 제시한 조건에 따라 채용한다.

구 분	내용
고용 형태	
근로개시일	
근무장소	
연 봉	
직무내용	
복지혜택	
:	

나. “참여기업”이 위의 고용조건을 “참여학생”의 동의 없이 과도하게 변경할 경우 “참여학생”은 주관대학의 장에게 3자 계약의 해약을 요청할 수 있다.

다. “참여학생”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참여기업”에 취업하며 성실히 의무근무에 임한다.

라. 본 확약서에 규정하지 않은 내용은 운영지침과 3자 계약서에 규정된 내용을 따른다.

20 년 월 일

“참여기업 대표” ○ ○ ○ (주) 대 표 (서 명)

“참여학생” (서 명)

(대구)대학교 총장 귀하

기업(신용)정보 관련 서약서

○ 당사는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에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약 사실과 다를 경우 사업 참여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신청일 현재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 상태인가?
(징수유예는 제외)

(예, 아니오)

2. 신청일 현재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었는가?

(예, 아니오)

3. 신청일 현재 파산, 워크아웃, 기업 및 대표(이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는가?

(예, 아니오)

20 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첨부 1. 법인의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2.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1부



대구대학교
DAEGU UNIVERSITY

[우] 38453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http://itcon.daegu.ac.kr>

대구대학교 정보통신대학2호관 IT융합학과 TEL.053)850.4760